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43
----------	-------

발의연월일 : 2025. 7. 30.

발 의 자 : 김용만 · 진선미 · 김남근
임미애 · 이학영 · 김한규
한준호 · 김태선 · 이춘석
한민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구호적 없이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만을 규정하여 광복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독립유공자가 등록되어있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후손의 경우, 「민법」에 따른 제척기간으로 인해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예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구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독립유공자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864조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된 경우 그 후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구호적과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된 사람으로서,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민법」 제864조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된 때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① (생 략) <u><신 설></u>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구호적 과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 록이 된 사람으로서, 독립유공 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민법」 제864조에 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의 유 족 또는 가족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 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된 때 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